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2. 2

발 의 자 : 정 순 민 의원
외 7 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91.12.31일과 92.2.15일자로 개정되어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
-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의회운영 중심으로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 개정이 요청됨.

2. 주요골자

-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(안 제16조)
-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 (안 제20조)

-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음 (안 제20조의 4)
-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(안 제51조의 2)
-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수 있음 (안 제55조의 2)
- 의회에 예산안,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(안 제61조 , 제65조)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의회간사에게"를 "의회사무과에"로 한다.

제 3 조 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

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

제 16조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20조의 제목 "(의안의 회부)"를 "(상임위원회 회부)"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.

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제 20조의 2 내지 제20조의 4, 제25조의 2, 제51조의 2, 제55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0조의 2 (특별위원회회부)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20조의 3 (심사기간)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20조의 4 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25조의 2 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51의 2 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제 55조의 2 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수 없다.

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제 46조 제1항중 "간사가"를 "사무과장이"로 한다.

제 61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.

-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-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다.

제 65 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-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-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 73 조 제1항중 "필요한 때에는" 다음에 "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"를 삽입하고, "필요한 경우에는" 다음의 "의장은"을 "의장이 단독으로"로 한다.

제 78 조 제1항중 "간사가"를 "사무과장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2 조 (등록) 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<u>의회간사에게</u>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 조 (의석배정) <u>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. 다만,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간사가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u></p>	<p>제 2 조 (등록) ----- ----- --- <u>의회사무과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 3 조 (의석배정) ① <u>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 16 조 (의사일정의 작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20 조 (의안의 회부) ① 의장은 <u>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·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</u></p>	<p>제 16 조 (의사일정의 작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 20 조 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은 <u>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.</u></p> <p><u>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위원</u></p>	<p><u>② 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/u></p> <p><u>(삭 제)</u></p> <p><u>(삭 제)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<u>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다.</u></p> <p><u>(신 설)</u></p>	<p><u>(삭 제)</u></p> <p><u>제 20 조의 2 (특별위원회 회부)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/u></p> <p><u>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(신 설)</u></p>	<p><u>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 20 조의 3 (심사기간)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다.</u></p>
<p><u>(신 설)</u></p>	<p><u>제 20 조의 4 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<u>(신설)</u></p>	<p><u>수 있다.</u></p> <p><u>제 25 조의 2 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(신설)</u></p>	<p><u>제 51 조의 2 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</u></p>
<p><u>(신설)</u></p>	<p><u>제 55 조의 2 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46 조 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</p> <p>①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<u>간사</u>가 서명날인</p>	<p><u>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<u>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</u></p> <p>제 46 조 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사무과장이</u> -----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61 조 (예산안심의)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<u>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</u></p>	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61 조 (예산안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<u>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</u></p> <p>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<u>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65 조 (결산의 심사) <u>의회에 결산</u> <u>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</u> <u>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</u> <u>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</u> <u>본회의에 부의한다.</u></p>	<p><u>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</u> <u>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</u> <u>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</u> <u>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</u> <u>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 65 조 (결산의 심사) ① <u>의회에 결산</u> <u>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</u> <u>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</u> <u>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</u> <u>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</u> <u>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</u> <u>한다.</u>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 73 조 (경호)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일정한</u>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<u>의장은</u>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78 조 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<u>간사가</u>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</p> <p>② ③ ④ (생략)</p>	<p>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.</p> <p>제 73 조 (경호) ① ----- -----<u>의회운영위원회의</u> <u>동의를 얻어 일정한</u> ----- ----- ----- <u>의장이 단독으로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78 조 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----- -----<u>사무과장이</u> -----</p> <p>② ③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